

# 대체인력지원사업(산재근로자)

## ● 사업목적

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**대체인력 인건비 지원**

\* 사업비 31.7억원('21년)

## ● 지원대상

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## ● 지원요건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, 장애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

## ● 지원내용

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**대체인력 임금의 50% 지원**(월 최대 60만원)

## ● 사업추진체계

대체인력 고용 (사업주)



지원금 청구 (사업주)



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(근로복지공단)

## 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: 1588-0075
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: [www.kcornwel.or.kr](http://www.kcornwel.or.kr)